
2020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

2020. 12.

(재)한국만화영상진흥원

1 인권영향평가 개요

진흥원 기관운영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권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, 인권경영 실천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(2018.8)
- 경영지원팀-2561(2020.6.16.,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)
- '진흥원 인권경영 실행지침' 제26조를 준수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

□ 평가대상

- 기관운영(기관 활동 전반), 주요 사업

□ 평가방법

- 진흥원 인권경영위원 및 내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
- 내부 실무담당부서의 평가

□ 추진경과

| 추진시기 | 추진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6월 | 인권경영 추진계획 보고 | 실무 담당부서 |
| 연중 | 인권경영 직원 교육(사이버 교육) | |
| 12. 2. |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평가지표 작성 | |
| 12. 16. | 인권영향평가 실무자 교육실시 | |
| 12. 16 ~ 23 | 인권영향평가 자체 평가 실시 | |
| 12. 28.~29. |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실시 | 내/외부 평가위원 |
| 12. 30. |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| 보고서 |

2

인권영향평가 시행

□ 인권영향평가 절차

○ 평가진행절차



□ 인권영향평가 실무평가

- (추진방향) 지표별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고, 내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
- (체크리스트 작성) 경영지원팀장(총괄) 5명
 - 구성 : 경영지원팀 임미영, 최하전, 이태영, 김현덕, 이철민, 이수진, 홍보마케팅팀 문가연
 - 주요 업무
 - .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작성
 - .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및 관련자료 제출

□ 평가방법과 기준

- (평가방법) 지표별 자체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서면평가 시행
 - 1차 평가 : 평가 지표별로 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(증빙자료 등)
 - 최종 평가 : 인권경영위원회 서면평가 진행
- ※ 담당부서가 동일함에 따라서, 2차 평가 미실시

※ 담당부서 변경(인사 담당부서 → 경영평가 담당부서)

○ (평가기준)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

| 구분 | 예 | 보완필요 | 아니요 | 정보없음 | 해당없음 |
|-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1점 | 0.5점 | 0점 | 평가제외 | 평가제외 |

□ 최종 평가위원

○ (인권영향평가) 평가위원 : 인권경영위원회 5명

- 내부위원 : 경영지원실장(위원장), 문화진흥실장, 직원대표(이태영)
- 외부위원 : 노무사 한광연, 변호사 김동섭

3 평가 결과

□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○ 종합평점 : 89.52점

| 구분 | 종합평점 | 세부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 예 (1.0점) | 보완필요 (0.5점) | 아니오 (0점) | 정보없음 (평가제외) | 해당없음 (정보없음) |
| 내용 | 89.52 | 163개 | 89 | 10 | 6 | 14 | 44 |

○ 최종심의 결과

- 심의방법 : 지표별 위원 전체 평가
- 심의결과
 - 지표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1건 외 수정 없이 평가 됨
 - 인권경영체제의 구축(1명 의견)의 평가가 자체평가 결과보다 상향 평가

※ 5명중 1명의 의견으로 전체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음.

○ 지표별 세부 평가결과

| No | 분야 | 항목 | 점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(85.5) | 1. 인권존중 정책선언 | 91.67 |
| | | 2.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| 62.5 |
| | | 3.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| 100 |
| | | 4. 인권경영성과 | 83.34 |
| | | 5. 구제절차마련 | 90 |
| 2 | 고용상의 비차별 (100) | 1. 고용상의 비차별 | 100 |
| | | 2. 고용상 남녀 비차별 | 100 |
| | | 3.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| 100 |
| | | 4.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| 100 |
| 3 |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(100) | 1.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| 100 |
| | | 2.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| 100 |
| | | 3.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한 이행 | 100 |
| 4 | 강제노동의 금지 (100) | 1. 강제노동의 금지 | 100 |
| | | 2. 자회사,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| 해당없음 |
| 5 | 아동노동의 금지 | 1. 연소자 고용금지 | 해당없음 |
| | | 2.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| 해당없음 |
| 6 | 산업안전 보장 (95) | 1. 작업장 안전 | 80 |
| | | 2.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| 100 |
| | | 3.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| 100 |
| | | 4.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| 100 |
| 7 |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(50) | 1.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| 0 |
| | | 2. 모니터링 실시 | 50 |
| | | 3. 보안담당 직원에의한 인권침해 방지 | 100 |
| 8 |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(100) | 1.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, 보호 | 해당없음 |
| | | 2.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| 100 |
| 9 | 환경권 보장 (83.34) | 1.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| 해당없음 |
| | | 2. 환경정보의 공개 | 해당없음 |
| | | 3.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| 해당없음 |
| | | 4. 비상계획 수립 | 83.34 |
| 10 | 민원고객 인권보호 (95.84) | 1. 민원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| 91.67 |
| | | 2. 민원고객 사생활 보호 | 100 |
| 11 | 직원 인권보호 (91.67) | 1. 갑질 예방 직원보호 | 66.67 |
| | | 2. 직장내괴롭힘 예방 | 100 |
| | | 3. 휴식권 보장 | 100 |
| | | 4. 일, 가정양립 추구 | 100 |

□ 지표별 권고 의견

| No | 분야 | 구분 | 평가 및 권고의견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1 |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| 고재경 | - 인권경영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-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외부 검토 필요 |
| | | 이용철 이태영 | - 정기 인권영향평가 실시 보완 -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인권경영 업무 틀 마련 필요 |
| | | 한광연 김동섭 | -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 실시 필요 - 인권영향평가 자체평정 점수 수정(62.5점→100점) - 인권경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 요망 |
| 2 | 고용상의 비차별 | 고재경 | - 고용시 공정한 채용이 진행됨 - 차별적 요소 사전방지를 위한 규정이 정비됨 |
| | | 김동섭 | -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에 대한 배려는 소극적 배려가 타당 |
| 3 |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| 고재경 | - 복수노조가 존재하고, 단체교섭에 대한 자유가 보장됨 - 교섭중인 단체협약이 잘 마무리되어 노사갈등 예방에 노력 필요 |
| | | 이태영 | -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바람 |
| | | 한광연 | -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니 협약의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당부함 |
| 4 | 강제노동의 금지 | 고재경 이태영 | - 유연근무 실시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운영 - 직원간의 업무 조율을 통해 직원 간 업무량 배분 필요 |
| | | 김동섭 | - 협력회사와의 협의시 관련의제로 다루기를 당부 - 협력회사의 인권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우며 진흥원의 의무라 할 수 없음 |
| 5 | 아동노동 금지 | | - 해당사항 없음 |
| 6 | 산업안전 보장 | 고재경 이태영 | - 작업장의 안전 및 취약자에 대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음 - 직원외 협력사 직원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항 점검 필요 |
| | | 한광연 | -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원방안 필요 |
| 7 |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| 고재경 | -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리태도 필요 |
| | | 이태영 | - 계약대상자, 지원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, 협약 체결시 인권에 대한 각서 등 징구 필요 |
| | | 한광연 | - 협력회사등의 인권 침해 예방 방안 강구(계약서 명시, 인권경영선언 등) |
| | | 김동섭 | - 입찰공고시 응찰자의 인권경영 내용 제출 요구 및 선정된 협력회사로부터 진흥원의 인권보호현장 및 지침의 준수각서 제출 요청 필요 |
| 8 |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| 고재경 | -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잘 됨 |

| No | 분야 | 구분 | 평가 및 권고의견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9 | 환경권 보장 | 고재경 | -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이 잘 됨 |
| 10 | 민원고객 인권보호 | 고재경 | - 민원처리 규칙에 따라 민원이 처리됨 |
| 11 | 직원 인권보호 | 고재경 이용철 이태영 | - 갑질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음 - 직장내 갑질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예방활동 필요 - 갑질예방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필요 |
| | | 한광연 | -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하여 상시적 설문 또는 신고창구의 운영 공식화 필요 |

□ 개선과제

○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

- 진흥원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메뉴 신설을 통한 인권실행 지침, 인권영향평가 결과 게시
-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·외부 점검 필요

○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

- 교섭중인 단체협약의 체결

○ 산업안전 보장

- 협력사 직원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항 점검 필요

○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

-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계약, 협약 체결시 인권경영에 대한 안내 및 준수 각서 등 징구 필요

□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

- 인권영향평가 결과, 진흥원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
- 인권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필요

- 선제적, 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사, 조직문화(사회적 가치) 관리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제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
- 내부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제절차 제도 구축
- 인권경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담당부서를 경영평가 담당 부서로 변경 필요(현, 경영지원팀→정책기획팀)

붙임 :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결과 1부.